

# 신용정보 활용 체제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의거하여 큐브인더스트리얼자산운용(주)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1.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
### 가. 이용 목적

- 1)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여부의 판단,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· 유지 · 이행 · 관리, 금융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 및 법령 상 의무이행 등
- 2) 고객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(해당 고객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정보 포함)를 제공 받은 목적
- 3)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하거나 경품 지급, 사은행사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
- 4) 통계 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과학적 연구(산업적 연구 포함),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

### 나.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
  - 개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번호 등)
  - 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 등
- 2) 신용거래정보(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의 대출정보, 담보 및 채무보증현황 등)
  - 개인신용거래 정보  
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가계 당좌 ·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· 대지급정보 등
  - 기업신용거래 정보  
가계 당좌 ·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, 연체 정보, 대위변제 · 대지급정보, 어음 · 수표부도정보, 대출 · 지급보증, 신용공여 현황 등
- 3) 금융질서 문란 정보

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4) 신용능력정보

- 개인의 직업, 재산 · 채무 ·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
- 회사의 개황, 수주실적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5) 공공기록정보

국세 · 지방세 · 관세 · 과태료 · 고용산재 보험료의 체납정보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회생 ·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결정 등

## 2.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### 가. 신용정보 제공대상

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제공 가능한 기관 등(금융투자협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업자 등)

### 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 및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
### 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## 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### 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(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시점. 단, 상거래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년간 보유)

### 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1) 회사의 규정 및 법령 등에 의하여 파기

2)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#### 4. 신용정보처리 위탁내용 및 수탁자

수탁자	위탁 내용
	집합투자재산의 회계 처리 등

#### 5.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

##### 가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

###### 1)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,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.

###### 2)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.

###### 3)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권

신용정보 주체는 최근 1 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.

###### 4)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등의 철회권

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.

##### 나. 권리행사방법

1)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

2) 상기 권리의 행사 신청 시 당사는 관련 내용에 관한 서면,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기타 관련 증빙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#### 6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담당자

신용정보 관리 부서	신용정보 관리 책임자	연락처
준법감시인	오 광 배	02-541-2410